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69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동현, 고병국, 권영희, 김태호, 김혜련, 신정호, 오한아, 이광호, 최 선, 최웅식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서 선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함.(안 제 46조 제 3항 제 2호)

○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의 뜻을 더 명확히 함.(안 제 47조 제 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6조 제 3항 제 2호 중 “어린이・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어린이・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・청소년”을 “어린이・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, 부의장”으로 한다.

제 47조 제 4항 중 “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”를 “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.”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 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 1. (생 략) 2.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·청소년 3. ~ 5. (생 략) ④ ~ ⑦ (생 략)	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참여위원회 ----------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, 부의장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 ⑤ ~ ⑧ (생 략)	제4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. ---------- 선임한다. ⑤ ~ ⑧ (현행과 같음)